

의안번호	제 36 호
의결년월일	1998. 11. 25.
의결사항	원안가결

발의자	57석의원외 3인
제출 년월일	1998. 11. 24.

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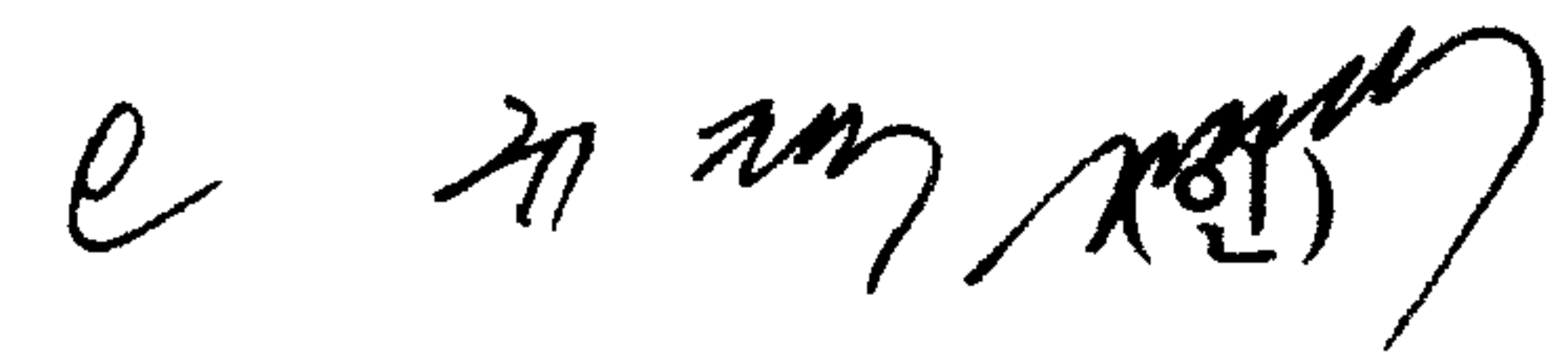
수신 의 장

제목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

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
“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”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
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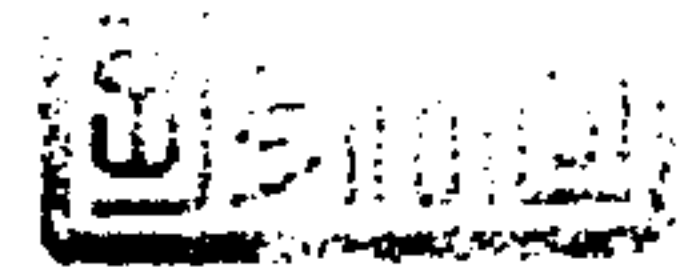
붙임 안건 1부. 끝.

발 의 자 :  (인)

(찬 성 의 원 서 명 : 붙 임 참 조)

■ 제 안 설 명

○ 98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받고자 제안합니다.



1. 감사의 목적은

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,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 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, 시책운영의 합법성,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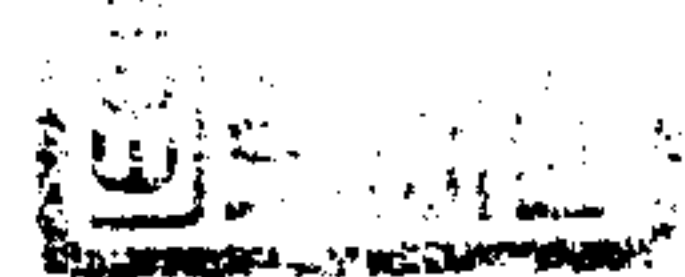
2. 감사의 실시기간은

1998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실시하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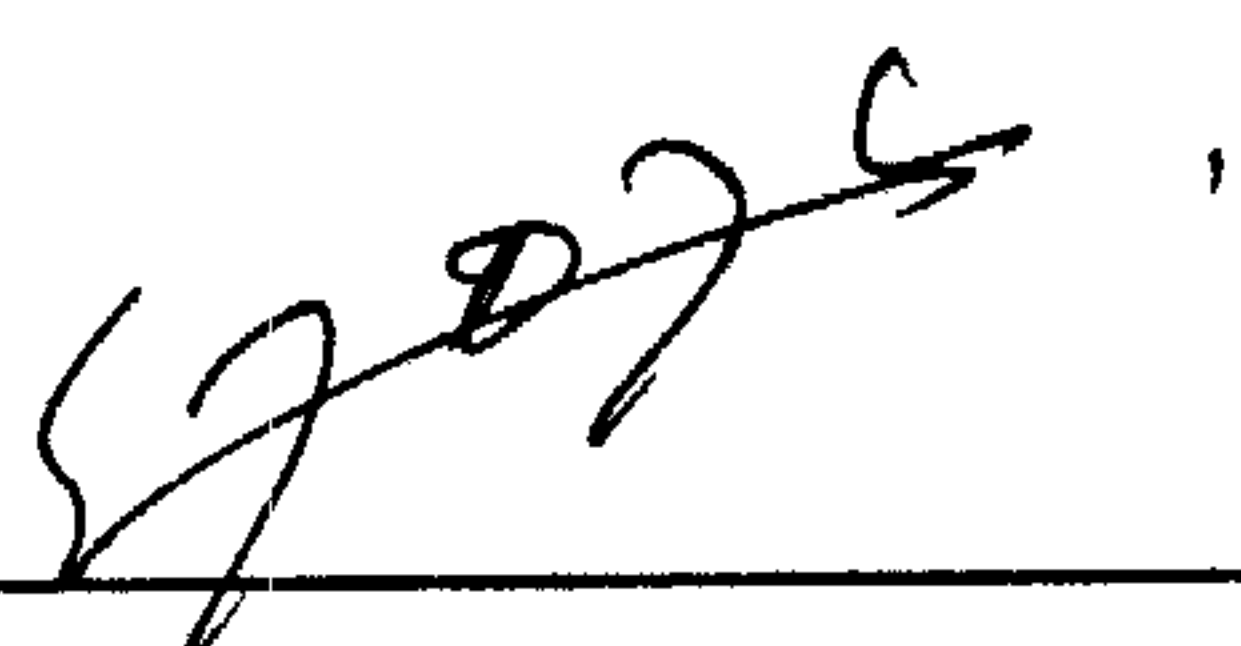
3. 감사실시 대상기관은

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으로 12개 실과사업소,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,

4. 감사반은 제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기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하고자 합니다.
5. 세부적인 감사일정, 그리고 감사방법 및 요령은 기배부된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의안찬성의원서명

성명	서명	(인)
김재환		
동민호		
박기영		